2007년 달라지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

제 도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 부서
중대재해보고기한 단축 (2007.1)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재해개요 등을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산업안전팀
산업안전팀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 방법 개선 (2007.1)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 방화,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자수에 포함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	산업안전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 금지(2007.1)	〈신 설〉	○지붕 · 천장 ·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제조 등 금지	산업보건환경팀
가중처벌제도 도입 (2006.9.25)	○사업주가 안전 ·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업주의 안전 · 보건조치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산업안전팀
과징금제도 도입 (2006.9.25)	○안전 ·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	○안전 ·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산업안전팀 산업보건환경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2006.1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2007.9.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안전보건정책팀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변경 (2006.12.12)	○폭발성 · 산화성물질 등으로 화학물질을 15가지로 분류 ○화학물질의 표시를 유해 · 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등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을 폭발성 · 인화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16가지), 건강유해성에 따른 분류(10가지) 및 환경유해성에 따라 분류 등 총 27가지로 세분화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을 유해 · 위험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림문자의 형태를 바꾸는 한편, 유해 · 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 등	산업보건환경팀

건설현장『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작성방법 변경

- 올 3월부터 재해형태별에서 작업공종별로 작성 -

현 행

[별표15]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제출항목	제출서류 및 내용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
○낙하 · 비래 예방계획	낙하 · 비래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계획
○붕괴방지계획	굴착 및 구조물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차량계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가. 안전규칙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 계획 나. 안전규칙 별표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감전재해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기계 · 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영 별표7에 의한 기계 · 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목공용 둥근톱, 교류아크용접기, 핸드그라인더 등)
○보건 · 위생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가.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작업 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계획 바.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화재 · 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화재 · 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가. 위험물질의 종류 · 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나. 위험물질의 저장 · 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다.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개 정

[별표15]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제출서류
제1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 등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1. 작업개요 2. 해당 작업 공종별 유해 위험 요인 및 재해 예방 계획
제1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량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제3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 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마.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기타공사	

○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 · 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올 3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작성 방법이 추락, 낙하 · 비래, 붕괴 등 재해요인별 작성에서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공사진행 순서별 작성으로 바뀐다.

또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법도 건설공사 모든 공종에 대하여 일괄 제출하는 한 가지 방식에서 공종별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는 높이 31미터 이상의 건축물, 터널, 교량 등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계획서대로의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현행 작성방법은 공사 진행에 따른 재해 위험요소와 개선대책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게 되었다."며,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작업공종별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모델을 개발, 건설현장 등에 보급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재해를 스스로 예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청장 朴鍾善)은 산업재해 취약시기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관내(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 건설현장중 겨울철 화재, 폭발 및 동파 등 위험이 있는 24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공단 서울본부의 기술지원을 받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12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하는 등 빠른 시일내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건설현장 특별점검은 폭설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혹한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며, 건설현장에 우려되는 화재, 폭발 및 동파위험, 특히 추락, 붕괴, 낙하 · 비래 등 재래형 재해발생 예방과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운전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조치이행에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12건을 시정지시, 사용중지 1건, 과태료부과 3건 등을 빠른 시일내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은 산업재해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하여 지난달에는 영등포구 문래동소재 아파트형공장 건축현장에서 근로자 200여명이 참석한 11월 「안전점검의 날」행사 개최와 공사금 500억원 이상 40개 건설현장소장이 참석한 동절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산업재해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부, 2006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발표

전국 30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 지방관서별로 우수한 감독관을 추천 받아 업무 실적, 청렴도 등을 3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6명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수상자는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보건주사 김형섭(41세), ▲부산지방노동청 전기주사 김성만(49세),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보건주사 신병진(46세), ▲경인지방노동청 기계주사 임관택(46세), ▲광주지방노동청 보건주사 강준희(45세),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화공주사 김진숙(35세)이 선정 되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일선 지방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포상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일선 산업안전감독관의 사기를 높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보건 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보건
김 형 섭

부산지방노동청 전기주사
김 성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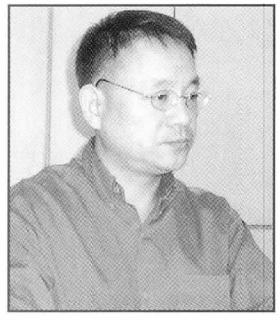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보건주사
신 병 진

경인지방노동청 기계주사
임 관 택

광주지방노동청 보건주사
강 준 희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화공주사
김 진 숙